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나노기술법

주체107(2018)년 7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14호로 채택

제1장 나노기술법의 기본

제1조 (나노기술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나노기술법은 나노기술발전계획의 작성과 실행, 나노기술의 연구 개발, 나노기술심의회와 도입, 나노기술과 경제의 일체화, 나노기술사업에 대한 조건보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나노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나노란 매우 작다는 뜻이며 1nm는 10억분의 1m를 나타내는 길이단위이다.
- 2 .나노기술은 적어도 한개의 공간방향에서 1nm부터 100nm까지의 크기를 가진 물질을 만듦 또는 다루는 기술이다.
- 3 .나노산업은 나노기술을 리용하는 전형적인 지식집약형산업, 첨단기술산업이다.

제3조 (나노기술발전원칙)

국가는 핵심적이고 건인력이 강한 나노기술분야를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도록 한다.

제4조 (나노기술과 경제의 일체화원칙)

국가는 나노기술발전에 의거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치며 나노기술과 경제의 일체화를 실현하도록 한다.

제5조 (나노기술인재양성 및 나노기술분야에 대한 투자원칙)

국가는 나노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양성하며 나노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도록 한다.

제6조 (국제적교류와 협조)

국가는 나노기술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2장 나노기술발전계획

제7조 (나노기술발전계획사업의 기본요구)

나노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실행하는것은 나노기술을 끊임 없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 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계획기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노기술발전전략과 나노기술발전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실행하여야 한다.

제8조 (나노기술발전전략의 작성)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국가과학기술발전전략에 기초하여 나노기술발전방향과 도달 목표, 실행방도를 밝힌 나노기술발전전략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노기술발전전략은 내각의 비준을 받는다.

제9조 (나노기술발전계획작성지도서의 시달)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나노기술발전전략에 기초하여 나노기술발전계획작성지도서를 작성한 다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제10조 (나노기술발전계획 및 과제의 분류)

나노기술발전계획은 수행 기간에 따라 전망계획과 당해년도 계획으로, 나노기술발전과제는 중요성에 따라 국가과제와 기관, 기업소과제로 나누어 작성한다.

제 11 조 (나노기술발전전망계획의 작성)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노기술발전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나노기술발전전망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노기술발전전망계획에는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해당 기간에 수행하여야 할 나노기술 발전의 총적 목표와 년차별목표, 보장조건, 기술경제적 효과성 같은것을 밝힌다.

제12조 (나노기술발전 당해년도계획의 작성)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노기술발전전략에 기초한 국가과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주문 과제, 계약과제를 비롯한 기관, 기업소과제를 배합하는 원칙에서 나노기술발전 당해년도계획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나노기술발전계획의 심의비준, 시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노기술발전계획초안을 작성하여 상급기관을 거쳐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제기된 나노기술발전계획 초안에 대한 과학기술심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국가계획 기관은 과학기술심 의에서 통과된 나노기술발전계획 초안을 검토하고 보장조건을 정확히 맞물림한 다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4조 (나노기술발전계획의 조절변경)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받은 나노기술발전계획을 조절변경할 수 없다.

필요에 따라 나노기술발전계획을 추가 또는 조절변경하려 할 경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합의와 계획을 비준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나노기술발전계획의 등록, 실행)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노기술발전계획을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통계기관에 등록하고 월별, 분기별, 년별로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16조 (나노기술발전계획실행률의 확인, 평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월별, 분기별 나노기술발전계획실행률을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확인을 받은 다음 통계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지역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통계기관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확인 및 평가를 받지 않은 나노기술발전계획의 실행률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7조 (나노기술발전사업비의 공급)

재정은행 기관은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확인을 받은 나노기술발전계획 실행률에 따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나노기술부문의 과학기술발전사업비를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18조 (나노기술발전계획의 실행총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노기술발전계획실행정형을 월별, 분기별, 년별로 엄격히 총화하여야 한다.

제3장 나노기술의 연구개발

제19조 (나노기술연구개발의 기본요구)

나노기술을 적극 연구개발하는것 은 나라의 응용과학기술과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노기술발전전략에 기초하여 나노기술연구개발대상과 목표를 바로 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20조 (나노기술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중앙과학기술행정 지도기관과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은 나노기술발전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원리적, 방법론적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21조 (나노물질과 그 응용기술의 연구개발)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나노물질과 그 응용기술을 적극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제22조 (나노물질, 나노기술제품의 분석과 인증)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개발한 나노물질과 나노기술제품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분석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가격기관이 정한 요금을 물어야 한다.

제23조 (공동연구, 협동연구의 조직)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노기술연구대상의 규모와 과학기술적내용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공동연구와 협동연구를 조직할수 있다.

제24조 (나노기술연구단위의 조직운영)

중앙과학기술행정 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나노기술분야에서 과학기술력량과 물질기술적수단을 집중적으로 동원리용하여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제때에 풀어나가도록 여러 형태의 나노기술연구단위를 조직하고 운영할수 있다.

제25조 (나노기술연구단위의 조직과 변경, 해체)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노기술연구단위를 새로 조직하거나 변경, 해체하려는 경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합의를 거쳐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나노기술분야의 대외교류와 협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노기술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필요에 따라 나노기술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여러가지 형태의 공동연구, 공동기술개발을 조직할 수 있다.

제4장 나노기술심의와 도입

제27조 (나노기술심의와 도입의 기본요구)

나노기술의 심의와 도입은 새로 연구개발한 나노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것을 생산과 건설에 받아들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새로 연구개발하였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선진나노기술을 정확히 심의하고 제때에 도입하여야 한다.

제28조 (나노부문과학기술심의회위원회의 조직과 임무)

나노기술의 심의를 위하여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비상설로 나노부문과학기술심의회위원회를 조직한다.

나노부문과학기술심의회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에 포함시킬 과제와 그 실행정형, 나노기술성과와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나노기술을 심의하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나노기술연구사업에 대한 학술적지도를 한다.

제29조 (나노기술의 심의)

나노기술심의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나노기술심의 신청문건을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나노기술심의신청문건을 나노부문과학기술심의회위원회에 넘겨 주어 정해진 기간안에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나노기술은 선전, 보급, 유통, 도입, 수출 입할수 없다.

제30조 (나노기술성과의 등록)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나노기술심의회에서 통과된 나노기술성과를 등록하고 해당 증명

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31조 (나노기술자료기지의 구축)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나노기술성과자료와 다른 나라의 나노기술정보자료를 수집하고 부문별, 대상별에 따르는 자료기지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2조 (나노기술의 보급)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나노기술보급체계를 정 연하게 세워 선진나노기술 자료를 널리 보급하며 나노기술전시회, 나노기술발표회같은것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제33조 (중요나노기술의 도입)

국가계획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나노기술도입계획을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나노기술도입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 34조 (주문, 계약에 따르는 나노기술도입)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심의등록된 나노기술성과를 주문과 계약에 따라 도입하여야 한다.

제5장 나노기술과 경제의 결합

제35조 (나노기술과 경제일체화의 기본요구)

나노기술발전에 기초하여 나노산업을 창설하고 나노기술과 경제를 일체화하는것은 지식경제강국건설의 중요한 요구이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노기술과 경제의 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36조 (나노산업, 나노기술개발구의 창설)

나노기술분야의 성과에 기초하여 나노과학기술력량이 집중되어있는 지구에 나노산업, 나노기술개발구를 창설운영할수 있다.

국가계획기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나노산업, 나노기술개발구창설과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세우고 계획에 맞물려 실행하여야 한다.

제37조 (나노산업, 나노기술개발구의 우대)

국가는 나노산업, 나노기술개발구의 창설, 운영과 관련하여 은행대부의 우선적제공, 유리한 토지 리용조건의 보장, 세금의 감면같은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38조 (나노기술제품의 생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지적창조물에 기초한 나노기술제품생산기지를 실정에 맞게 꾸리고 운영할수 있다.

나노기술제품생산기지를 새로 조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합의를 거쳐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나노기술에 기초한 기술개건, 현대화실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진적인 나노기술에 기초한 설비와 생산공정의 기술개건, 현대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제40조 (나노기술에 기초한 기술개건, 현대화대상의 심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노기술에 기초하여 설비와 생산공정을 기술개건 및 현대화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나노기술관련공장 또는 설비, 생산공정을 들여오려는 경우 나노부문 과학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나노기술에 기초한 기술개건, 현대화요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노기술에 기초한 설비와 생산공정의 기술개건, 현대화를 기술과제와 설계의 요구에 맞게 하여야 한다.

나노기술에 기초하여 기술개건, 현대화한 설비와 생산공정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나노기술사업의 조건보장

제42조 (나노기술사업조건보장의 기본요구)

나노기술사업조건을 잘 보장하는것은 나노기술발전을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나노기술사업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며 나노기술연구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 43조 (나노기술발전자금보장)

국가계획 기관과 재정은행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노기술부문의 과학기술발전사업 비용을 체계적으로 늘여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은 나노기술제품생산기지를 꾸리고 실속있게 운영하여 연구개

발자금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제 44조 (나노기술연구기지 강화)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연구실, 실험실, 중간시험공장을 비롯한 나노기술연구기지를 나노기술연구사업에 지장이 없게 꾸려야 한다.

제45조 (나노기술발전계획실행에 필요한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노기술발전계획실행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금, 자재를 계획에 맞물려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6조 (나노기술연구설비의 공동리용)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나라의 나노기술발전을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는 나노기술연구설비, 수단을 공동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는 나노기술연구설비, 수단의 보유 및 리용정형을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정상적으로 통지해 주어야 한다.

제47조 (나노기술인재의 양성과 배치)

과학 및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나노기술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바로세우고 나노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워야 한다.

해당 기관은 수재양성체계를 거쳤거나 다른 나라에서 나노기술교육을 받은 유능한 인재를 나노기술연구부문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7장 나노기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8조 (나노기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나노기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나노기술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9조 (나노기술사업에 대한 지도)

나노기술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국가의 나노기술사업을 조직하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

야 한다.

제50조 (나노기술통계지표분석, 년보작성)

중앙통계 기관은 나노기 술활동과 발전수준을 객 관적으로, 정 량적으로 평 가할수 있는 나노기 술통계지표를 바로 정하고 해마다 집계분석하며 나노기술발전에 리용하게 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 기관과 해당 기관은 나노기 술통계자료에 따라 나노 기 술활동을 평가하는 나노기술년보를 해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제51조 (나노기술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나노기 술사업 에 대 한 감독통제 는 중앙과학기술행 정 지 도기 관과 해 당 감독통제기 관이 한 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나노기술발전계획의 작성과 실행, 나노 기 술의 연구개발, 나노기술심의와 도입, 나노기술과 경제의 일체화, 나노기술사업조건보장정 형 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2조 (비법적인 나노물질, 나노기술제품생산의 중지)

나노물질과 나노기술제품에 대한 분석과 인증을 받지 않고 그것을 생산할 경우에는 중지시 킨 다.

제53조 (행정적 책 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국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 한 행 정처벌을 준다.

1. 나노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지 않았거나 제때에 시달하지 않았을 경우
2. 나노기술발전계획을 제때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승인없이 조절변경하였을 경우
3. 나노기 술발전계 획을 미 달하였거 나 계 획 실행률을 허 위보고하였을 경우
4. 나노기술발전계획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았거나 나노기 술발전로 력 과 자금, 설비, 자재를 다른 사업에 류용하였을 경우
5. 나노기술연구기관의 조직, 변경, 해체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6. 나노기술연구사업공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과학기술심의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 우

7.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하지 않은 나노기술을 선전, 보급, 유통, 도입, 수출입하였을 경우
8. 나노기술연구성과 또는 선진나노기술의 도입대책을 제때에 세우지 않았을 경우
9. 나노기술연구성과를 과장하였거나 망탕 도용하였을 경우

제54조 (형사적 책임)

이 법 제53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 적공민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